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운영 목적 및 방향

가. 운용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운용방향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요약 1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예산 : ('15) 3조 260억원 ⇒ ('16) 3조 5,100억원 ○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 * 창업기업지원 : ('15) 1조 3,000억원 → ('16) 1조 4,500억원 (1,500억원 ↑) * 재도약지원 : ('15) 1,990억원 → ('16) 2,550억원(560억원 ↑) ○ 수출금융지원사업 지원예산 확대 * ('15) 750억원 → ('16) 1,250억원 (↑ 500억원) ○ 한·중 FTA 피해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지원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 300억원, 사업전환 260억원, 긴급 경영안정 50억원	4,840억 (16.3% ↑)
수출, 고용 기업 지원 강화	○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기업평가 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 등을 신설하여 고용우수·수출 중소기업 평가 우대 * 고용 및 수출 지표 20%이내 반영 예정('16.상반기 시행예정) ○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16.하반기 시행예정) ○ 일자리 창출 기업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시설투자 활성화	○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인정 비율 상향(80%→100%) ○ 시설자금 활용 시 우대금리 적용(0.7%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기간 확대(5년→6년)	일부 자금 제외
자금별 지원요건 개선	○ (창업기업자금) 직접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을 30%이상 상환하고,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 최대 2년까지 연장('16.상반기 시행예정) * 상환기간 연장 신청 기준 업력 3~7년 기업 ○ (투융자복합) 이자부담 최대한도 완화, 고정이자 경감	
재도전 활성화	○ 재창업자금 접수를 격월접수→수시접수로 변경 ○ 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대상 확대 ○ 재창업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연 2회) 적용 배제 ○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기업평가시 신용위험평가 면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15.4Q) 2.60% ⇒ ('16.1Q) 2.52%	△0.08%p
예약시스템 운영	○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16.2월 예정)	

요약 2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자금명		예산(억원)		신청대상	대출기간	대출한도	금리
		'15	'16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12,000	13,500 (1,500억중)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시설: 8(3)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청년전용창업	1,000	1,000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시설: 6(3) 운전: 5(2)	· 1억원 이내	2.5% (고정)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	750	1,100 (350억중)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시설, 운전: 5(2)	·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별도기준
	성장공유	200	350 (150억중)	기업공개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시설,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10억원 이내)	
	프로젝트금융	50	50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시설, 운전: 7(-)	· 10억원 이내 (소요금액 70% 이내)	
개발기술사업화		3,000	3,500 (500억중)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시설: 8(3) 운전: 5(2)	·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3,970	5,200 (1,230억중)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시설: 8(3)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50%p
	기술사업성우수	500	500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시설: 15(5) 운전: 5(2)		
	고성장기업	2,800	2,800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지방 15%) 이상 증가한 기업 등	시설: 8(3) 운전: 5(2)		
	협동화	1,000	1,000	협동화 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 승인 기업	시설: 10(5) 운전: 5(2)	· 10억원 이내 (운전 2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기초제조기업	2,000	2,000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시설: 8(3) 운전: 5(2)		
제도약지원	사업전환	990	1,250 (260억중)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시설: 8(3)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재창업	700	1,000 (300억중)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시설: 9(4) 운전: 6(3)		
	구조개선전용	300	300	구조개선전용 신청요건 충족 기업	운전: 5(2)	·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	250	300 (50억중)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요건 충족기업	운전: 5(2)	·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1.05%p
	수출금융	750	1,250 (500억중)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금			2.4% (고정)
				재해 피해 중소기업	운전: 180일 이내 (최장 1년)	· 2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16.1Q) : 2.52%
-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 4), 소재·부품산업(별표 5), 지역전략·연구산업(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별표 7),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 바이오산업(별표 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 10), 물류산업(별표11)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 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⑤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⑥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⑦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⑦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 금리우대(고용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2%p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일정기간 우대(세부기준 마련 후 '16하 시행 예정)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건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단,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온라인으로 용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용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수출금융)

< 사업별 용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용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16.상 시행예정)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용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 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 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업은 예외), 신용평가 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코스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 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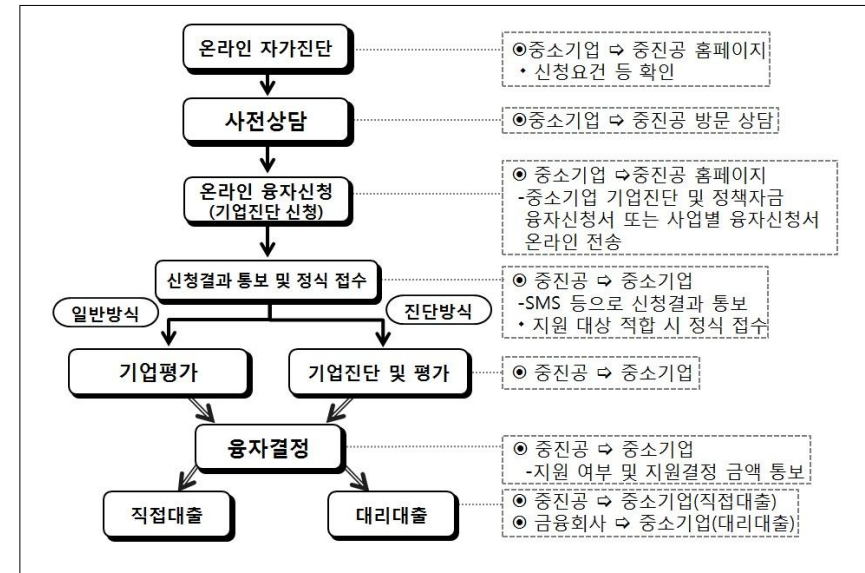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
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
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아.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 6678-4127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45
서울북부 (중구)	02) 769-643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84-363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40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300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6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안산시)	031) 496-1000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70
대전 (대전시)	042) 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 공주시 ,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청양군, 옥천군 , 영동군 , 당진군 ,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 예산군 ,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 옥천군 ,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 익산시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 내남면 ,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 철원군,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 정선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 장성군, 함평군 ,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 함평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함창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용자규모 : 1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35%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
 - * 이익연동이자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4%
 -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

바. 융자절차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용자규모 : 3,5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용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나. 용자규모 : 11,500억원

다. 신청대상

-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용자제외
-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6)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6) 영위기업

- * 인재육성형 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 * 글로벌 진출기업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업체 중 수출기업 및 수출추진 중소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업체)
- * 인재육성형 기업 및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 단, ①의 경우, 최근 3년의 시작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 등 기계시설을 지원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은 지원제외)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 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5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 16)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용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2.공통사항> 바. 용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용자제한)

① 기업 구조개선 진단 대상기업

- * (구조개선진단 대상)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 * 단,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은 <2.공통사항>바. 용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적용에서 제외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대상기업

- * (경영개선진단 대상)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 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 <2.공통사항> 바. 용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용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나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용자규모 : 1,55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라. 용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용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6)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월 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월전분기와 전전분기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를 2회 이상 지원기업은 용자 제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용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4%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 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중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 인증기업은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 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별표2>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용자
1	A01(농업-중소기업)	169.1	500.0	1,000.0
2	A03(어업-중소기업)	295.3	500.0	1,000.0
3	B(광업-중소기업)	149.1	447.3	894.7
4	C(제조업-중소기업)	158.6	475.7	951.3
5	C101-4(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167.7	500.0	1,000.0
6	C105(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42.7	200.0	400.0
7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및조제식품)	139.5	418.4	836.9
8	C107(기타식품)	90.4	271.3	542.5
9	C111(알콜음료)	94.7	284.2	568.5
10	C112(비알콜음료및얼음)	82.3	247.0	494.0
11	C131(방직및가공사)	94.7	284.0	567.9
12	C132(직물직조및직물제품)	137.7	413.0	826.1
13	C133,4,9(기타섬유제품)	134.9	404.7	809.5
14	C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중소기업)	170.9	500.0	1,000.0
15	C15(가죽,가방및신발-중소기업)	184.7	500.0	1,000.0
16	C16(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180.0	500.0	1,000.0
17	C17(펄프,종이및종이제품-중소기업)	128.5	385.4	770.8
18	C18(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중소기업)	194.1	500.0	1,000.0
19	C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중소기업)	160.0	479.9	959.7
20	C201(기초화학물질)	81.4	244.1	488.2
21	C202(비료및질소화합물)	122.7	368.1	736.2
22	C203(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79.2	237.7	475.3
23	C204(기타화학제품)	72.2	216.7	433.4
24	C205(화학섬유)	394.4	500.0	1,000.0
25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중소기업)	98.1	294.3	588.7
26	C221(고무제품)	101.9	305.8	611.5
27	C222(플라스틱제품)	124.0	371.9	743.9
28	C231(유리및유리제품)	63.8	200.0	400.0
29	C232(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85.8	257.5	515.0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용자
30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그제품)	119.4	358.3	716.5
31	C239(기타비금속광물제품)	112.9	338.8	677.6
32	C241(1차철강)	73.1	219.4	438.7
33	C242(1차비철금속)	87.3	261.8	523.6
34	C243(금속주조업)	169.4	500.0	1,000.0
35	C25(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중소기업)	183.7	500.0	1,000.0
36	C261,2(반도체및전자부품)	79.8	239.3	478.7
37	C263(컴퓨터및주변장치)	103.0	309.1	618.2
38	C264(통신및방송장비)	32.5	200.0	400.0
39	C265,6(영상및음향기기,마그네틱및광학매)	164.7	494.0	988.1
40	C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중소기업)	99.7	299.2	598.3
41	C281(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118.4	355.2	710.5
42	C282,4,9(기타전기장비)	56.5	200.0	400.0
43	C283(절연선및케이블)	226.0	500.0	1,000.0
44	C285(가정용기기)	96.4	289.1	578.2
45	C291(일반목적용기계)	133.2	399.6	799.2
46	C292(특수목적용기계)	138.7	416.1	832.1
47	C301(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56.8	200.0	400.0
48	C302,3(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자동차부품)	116.8	350.5	701.1
49	C311(선박및보트건조업)	255.7	500.0	1,000.0
50	C312,3,9(철도,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131.9	395.7	791.3
51	C32(가구-중소기업)	179.0	500.0	1,000.0
52	C33(기타제품제조업-중소기업)	136.1	408.4	816.8
53	D351(전기업)	137.0	411.0	822.0
54	D352,3(가스,증기·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266.3	500.0	1,000.0
55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중소기업)	152.2	456.5	913.0
56	E37,E381,2(하수,폐수및분뇨처리,폐기수집운반·처리업)	157.2	471.6	943.1
57	E383(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08.7	500.0	1,000.0
58	F41(종합건설업)	177.5	500.0	1,000.0
59	F42(전문직별공사업)	71.2	213.7	427.5
60	G45(자동차및부품판매업)	212.5	500.0	1,000.0
61	G46(도매및상품중개업)	210.1	500.0	1,000.0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용자
62	G47111(백화점)	77.0	231.1	462.3
63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제외))	103.0	309.0	617.9
64	G472-8,G4792-9(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제외))	142.9	428.7	857.5
65	G4791(통신판매업)	95.0	285.1	570.1
66	H491(철도운송업)	122.4	367.1	734.1
67	H492(육상여객운송업)	269.4	500.0	1,000.0
68	H493-5(도로화물,소화물전문,파이프라인운송업)	110.0	329.9	659.7
69	H50(수상운송업)	534.8	500.0	1,000.0
70	H51(항공운송업)	596.3	500.0	1,000.0
71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65.9	497.6	995.2
72	I55(숙박업)	110.5	331.6	663.2
73	I56(음식점및주점업)	173.5	500.0	1,000.0
74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82.7	248.2	496.5
75	J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92.0	275.9	551.8
76	J59(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84.7	500.0	1,000.0
77	J60(방송업)	51.8	200.0	400.0
78	J61(통신업)	112.7	338.0	676.0
79	J62(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88.2	264.5	529.0
80	J63(정보서비스업)	70.1	210.4	420.7
81	L68(부동산업)	509.4	500.0	1,000.0
82	L69(임대업(부동산제외))	223.4	500.0	1,000.0
83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중소기업)	124.7	374.0	747.9
84	M71(전문서비스업)	143.8	431.5	862.9
85	M711,2(법무,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115.4	346.3	692.5
86	M713(광고업)	157.4	472.1	944.3
87	M714,7153(기타전문서비스업)	141.6	424.9	849.7
88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125.3	375.8	751.6
89	M73(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4.9	464.6	929.2
90	N74(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100.9	302.8	605.6
91	N751(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126.0	377.9	755.8
92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27.9	383.6	767.1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용자
93	N753(경비,경호및탐정업)	72.9	218.6	437.2
94	N759(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167.2	500.0	1,000.0
95	P(교육서비스업-중소기업)	360.8	500.0	1,000.0
96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중소기업)	710.2	500.0	1,000.0
97	S95(수리업)	214.7	500.0	1,000.0
98	S96(기타개인서비스업)	1,027.8	500.0	1,000.0
99	기타산업	-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미래성장동력 분야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스 마 트 자 동 차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 유지 서비스 ·교통체증 저속구간 자동 운전지원 서비스 ·다차로 차선변경 서비스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 지원 서비스 ·전용주차장에서의 자동 주차 서비스 ·Last 마일존 근거리 교통 서비스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주변상황 인식을 위한 센싱시스템 기술 -레이더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영상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맵 -보급형 고정밀 복합 측위 모듈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기반 주행맵 구축·공유 SW 기술 -수백Mbps급 V2X 통신·보안 시스템 기술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기술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차별화된 상품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IVN/운전자수용성 HVI 기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모듈 -차세대 IVN 기반 통합 DCU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액추에이터/ADR 기술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ADR 모듈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고도화 기술 -스마트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환경 구현 기술개발 -자율협력주행 자동차 연계 및 실증 기술개발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교통운영·관리 기술 -동적 전자지도 플랫폼(LDM) 기술개발	[후방산업] 26299 27216 27329 58221 [본산업] 27211 26429 30121 30320 30392 30399 [연관산업] 28903	
	5 G 이 동 통 신	·5G 기반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램) 서비스 ·5G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램) 단말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5G 무선전송 용량증대 기술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Unlicensed -mmWave 기반 광대역 통신 -차세대 Wi-Fi 기술 ·이동 네트워크 기술 -고성능 인프라 및 차량간 직접 통신 기술 -차량형 이동셀 기술 -멀티 플로우(Multi-flow) 기술 -빔 간 고속 핸드오버 기술	[후방산업] 26110 26211 28202 [본산업] 26429 58222 61220 61299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5 G 이동통신		▪ 저지연·고신뢰 기술 및 다수 디바이스 수용 기술 -Short TTI 기술 -New Waveform 기술 -Fast 상향링크 기술 -대규모 디바이스 접속 기술 -다수 디바이스 연결 기술 ▪ 5G 소형셀 기술 -Ultra-Dense Network(UDN) 무선 전송 기술 -무선 백홀 기술 -멀티 RAT, 다층셀 Cloud RAN 기술 -Ultra-Dense소형셀가상화구조 -Advanced SON기술 ▪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콘텐츠 변환 기술 -콘텐츠 획득 및 고속화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기술	
심해저 /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 해상 부유식 플랫폼 및 심해저/극지 원유·가스 생산·정제 통합 설계 엔지니어링 ▪ 심해저 석유·가스 생산/처리 시스템 ▪ 심해 해양플랜트 설치 서비스 ▪ 극한 소재, 핵심기자재 및 인증 기술	▪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개발을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부유체 및 복합계류 기술 ▪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 시스템 기술 -고효율 수분 제거 (Dehydration) 시스템 -고농도CO₂ 천연가스처리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 처리(Sweetening) 시스템 -신개념 NGL 회수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시스템 ▪ 심해저 생산 및 처리 시스템 기술 -고속 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템 -심해저 다상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 주입 시스템(SWIT) -심해용 URF (Umbilical/Riser/Flowline) -심해저 대용량 Manifold & Template ▪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해저 Foundation 및 Stable 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해석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후방산업] 26299 27219 58222 62010 63991 24132 [본산업] 29131 31119 42136 72129 [연관산업] 41224 41225 05200 08010 08090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 고고도 장기체공 시범기 ·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활용기술 ·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 무인기 핵심기술 및 선도기술 -틸트로터 제어기술 -프롭로터 기술 -드라이브 시스템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 비행성능 운용성 향상기술 -체공성능 향상기술 -함상운용 핵심기술 -고효율 프로토타입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 무인기 자율화 기술 -자율비행기술 -복수무인기 제어기술 · 전파교란대응 기술 -위성항법신호 항재밍 기술 -GNSS 대체항법 기술 · IMA 표준플랫폼 기술 -IMA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 -항공응용 SW 개발/검증 도구	[후방산업] 26299 27211 28202 31321 31322 58221 62010 [본산업] 31310 [연관산업] 27216 61299 02040 03111 72129
지능형로봇	· 재난대응 로봇 · 헬스케어·의료 로봇 · 국방 로봇 · 인간과 소통하는 HRI 로봇	· 로봇지능기술 -로봇 인식 지능, 로봇 이동 지능 -로봇 조작 지능, 로봇 소셜 지능 -로봇 지능 체계 · 인지(Cognition)기능의HRI기술 -표정 인식기술, 제스처 인식 기술 -대화 인식 기술 · 로봇 시스템 설계 기술 -안전 로봇 기술 -작업적 교시 기술, 그래픽 기술 · 로봇 부품 기술 -로봇 센서 기술, 로봇 구동기 기술 -로봇 제어기 기술	[후방산업] 26299 28202 58222 [본산업] 29280 [연관산업] 58221 62010 62021 72129 26310 26429 26519 27215 27219
착용형 스마트기기	· 게임, 실감 미디어 등 재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 가능한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 · 기기가 착용되거나 부착·삽입 되어 있는 동안 활동량, 인체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완성품을 고려한 착용형 스마트 기기 특화기술 · 사용자의 의도·명령·생체신호 등 정보 입력 감지·진단·분석 기술 · 시각 및 촉각 중심의 정보 전달 및 표시 기술 · 착용시 불쾌감·피로감·유해성 없이 자유롭게 안전한 정보처리 기술 · 기존 금속소재 전자가 아닌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난 소재 기반의 플렉시블 배터리 기술	[후방산업] 26110 26211 26219 26299 27219 28202 13213 26322 [본산업] 26422 26429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착용형 스마트기기	▪ 위험, 재난 상황 감지 등 주로 공공적 성격의 특수 업무 수행 및 개인 정보 인증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 급격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응용서비스 기술 -레저 등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ICT 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안전, 의료, 재난 방지 등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개방형 스마트 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27112 58221 [연관산업] 27213 61220 62010 70121 62021 63112
실감형 콘텐츠	▪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개인 체험 서비스 ▪ 센싱 기반 Co-presence Virtual Life-experience ▪ 홀로캐릭터 (Holo-character) 콘텐츠 기반 Concierge 서비스 ▪ 멘탈헬스케어 콘텐츠 & 서비스	▪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비전 -3D /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AR / MR / VR, NUI / NUX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 인포콘텐츠 기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 감성·뉴로콘텐츠 기술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 웨어 -오감인식 감성 UI/UX ▪ 빅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술 -콘텐츠 패키징·분산 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후방산업] 58221 63999 [본산업] 58222 59114 70121 63991 [연관산업] 26211 26219 27112 62010 63112
스마트 바이오 생산 시스템	▪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품 생산 시스템 (생산장비, 공정 / 분석기기, 부품SW)	▪ 세포치료제 자동생산시스템 ▪ 세포구조체 제조기기 ▪ 항체치료제 생산시스템 -동물세포배양시스템(바이오리액터) -바이오의약품 분리정제시스템(크로마토그래피) -공정기기(연속배양시스템) -융복합 분석기기(실시간 이미징 세포분석기) -기타 공정분석기기	[후방산업] 29131 [본산업] 27215 27216 27213 27219 58222 [연관산업] 21102 21210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가 상 훈 련 시 스 템	▪ 표준화된 다목적 가상 훈련 플랫폼 구현, 원격 협업 지원 및 지속적 서비스 ▪ 체감형 헬스트레이닝 ▪ 수송운전 훈련 ▪ 가상수술 훈련 ▪ 대형선박 사고대응 훈련	▪ 고부가가치 시뮬레이션 SW 기술개발 -물리동역학 엔진 / 변형체 모델링 -시나리오 저작도구 ▪ 체감효과를 높이는 HW 핵심요소기술 개발 -고해상도/고강건성/저가격 영상재현 핵심모듈 -몰입형 HMD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 요소기술 -고품질, 고응답성 햅틱 제시장치 및 렌더링 기술 -모션플랫폼의 구동모터 및 드라이버 -다목적 구동용 joint부 모듈 개발 ▪ 지능형 에이전트 및 시나리오 저작 도구 개발 -스스로 자각 추론 학습 의사전달 행동을 수행 하는 에이전트 기술 -자연현상을 살감 있게 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 가상체험 기술 고도화 -고품질 HMD(4k 해상도, 120도 FOV, 모션센서) -대화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8K 해상도, 150도 FOV) 및 SDK 개발 -다자유도 지원 모듈화 체감형 모션 발생장치 (모션과 부하 체감부) 및 SDK개발 ▪ 가상훈련서비스 -헬스트레이닝 가상수송운전훈련 -수술시뮬레이터, 대형선박사고 대응훈련	[후방산업] 26211 26219 26299 58221 63991 [본산업] 62010 [연관산업] 31310 62090
	맞 춤 형 웰 니 스 케어	▪ 개인 건강정보(병원 진료 기록, 한의임상기록, 일상생활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의 개인주도 관리를 위한 개방형 공통 플랫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개인건강기록 활용을 위한 개방형 개인건강 빅데이터 공유·보안 기술 -데이터 접근 통제 기술, 익명화 기술 ▪ 개인건강기록 연동·통합을 위한 저장 및 교환 표준체계 구축 기술 -용어/코드 표준화 건강 정보 연계 기술 ▪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 시 정보 위변조 방지 -라이프로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 모델 ▪ 개인 건강정보 기반 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연계 기술 -정형 비정형 데이터 저장 기술 -대용량 데이터 저장/분석 기술 -데이터 추론 기술, Alert/reminder 기술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재난 안전 관리 스마트 시스템	-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Smart big board) -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 시스템 -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실시간 재난상황 영상 전송 시스템) -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스마트빅보드, 시뮬레이션빅보드 -사큐터티브로드, 사이프터빅보드 -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기술 개발 -X-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 기반 가뭄/하천건조화 평가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평가 및 예측 기술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기술 -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지원 기술 -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IoT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침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자반 감시 기술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26421 [본산업] 26410 26429 61220 62010 62021 63991 [연관산업] 62090 72129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태양광, 연료전지, ESS, 히트펌프, 태양열, 축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한 분산형/독립형 전력 및 열 생산 시스템 -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의 탄소저감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NRE-H 시스템 - 도심형 제로에너지빌딩, 낙후지역 등의 에너지 자립 및 저탄소화를 위한 NRE-H 통합솔루션 - NRE-H 기반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수소 공급 인프라 - Engineering Consulting을 기반으로 NRE-H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융합 플랫폼	- NRE-H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스템 -NRE-H 고효율전기/수소생산기술 -On-site, Off-site 전기/수소 복합충전소 요소 기술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탄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 NRE-H 기반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연료전지-ESS 하이브리드 발전/전력저장 기술 -바이오연료 NRE-H 기술 -하이브리드시스템인테그레이션기술 -다단계 융합형 지열 발전 및 열전소자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태양열-연료전지-히트펌프 Tri-generation 기술 - NRE-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청정가스 변환시스템 -MCFC-PRS 하이브리드 복합발전 기술 -MCFC 복합발전을 통한 고효율 청정가스 생산기술 - NRE-H 시스템 ICT융합 플랫폼 기술 -ICT 융합 고효율 발전 지원 기술 -ICT 융합 능동적 관리 기술 -Engineering Consulting 기술 -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H 통합솔루션 시스템 기술	[후방산업] 20129 26295 27212 27213 29119 29176 41225 [본산업] 28111 28112 28202 35119 62021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NRE-H 다기능 건물외피 시스템 기술 -제로에너지 건물용 NRE-H 적교류 배전 시스템 기술	
직류송· 배전시스템	▪ 교류-직류 변환을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송전하는 시스템	▪ 80kV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8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 개발 (스위치, 차단기, 제어보호시스템, MNC기술)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기초연구 ▪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기초 연구 -MVDC 마이크로 그리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MVDC 배전선로용 전력변환기 요소기술 개발 ▪ 250kV 전압형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25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제어플랫폼 이중화 및 시각동기 시퀀스, 변압기 및 DC 선로 보호기술, HVDC 통신 네트워크, 밸브 절연물, 250 차단기)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을 Hardware in-Loop(HIL) 검증 ▪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개발 상용화 연구 -AC/DC 하이브리드 배전계통 최적 운영기술 개발 -MVDC 핵심 부품개발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시스템)	[후방산업] 28111 28202 28302 28303 29119 [본산업] 28112 28121 28122 [연관산업] 61220 72129
	▪ 초임계 상태의 CO ₂ 를 사용하여 기존 발전기술 대비 획기적 발전 효율 향상과 모듈화가 가능한 고효율 초소형화 전력생산 시스템 개발 기술	▪ 초임계 CO ₂ 발전시스템 요소기술 -고효율 초임계 CO ₂ 공정 구성 -공정 적용을 위한 물성 DB -공정 내 입자 생성 메커니즘 규명과 억제기 법과 공정 적용 기술 개발 -공정 내 Recovery& Supply 기술 개발 -공정을 위한 기존재료 건전성 평가 -공정 모듈화 기술 개발 -공정 위험분석과 평가 기술 개발 ▪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초임계 CO ₂ 공정계통 동적 시뮬레이터 개발 ▪ 엔지니어링 고효율화 기술 -생애주기 지식기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SE(Systems Engineering) 기반 개발 관리 기법 개발과 적용 -EPC 및 센서 데이터 기반 플랜트 유지보수 지원 ▪ 초임계 CO ₂ 터빈 -터빈 설계·제어 기술 개발 -대용량 터빈 평가기술 개발	[후방산업] 26299 28111 28112 28121 28122 28202 28302 28303 29141 [본산업] 29119 29176 35119 [연관산업] 58221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초 임 계 CO ₂ 발 전 시 스 템		▪ 초임계 CO₂ 압축기 -공정 설계 해석 기술 개발 -베어링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축 하중 저감 및 제어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 초임계 CO₂ 발전시스템 고집적 고온 고압 열 교환기 -소재 선정 및 접합 기술 개발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 10MW급 초임계 CO₂ 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공정 설계 기술 개발 -주요 공정 기술 개발 -기존 발전소 연계 설계 기술 개발 ▪ 10MW급 초임계 CO₂ 발전시스템 건설 및 운영 기술 -상세 설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건설기술개발 -기존 열원 공정 연계 시스템 개발 ▪ 열원별 연계 설계 기술 -신재생 열원 연계 설계 기술 개발 -화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복합발전 연계 설계 기술 개발 -원자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 300MW급 대용량 초임계 CO₂ 발전 플랜트 설계 기술 -발전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발전 보조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61220 72129
	지 능 형 반 도 체	▪ 스마트융합기기용 지능형 반도체 ▪ 스마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용 고감도 지능형 센서 ▪ 스마트통신용 지능형반도체 ▪ 웰니스케어용 지능형반도체 ▪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 반도체	▪ 지능형반도체 설계기반기술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SoC IP 기술 -반도체 SW Tool 기술 -SoC+SW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 스마트 인자·제어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지능형센서 기술 -인지신호 처리·제어 -SoC+SW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기술 ▪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고속 이동통신 SoC+SW 기술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지 능 형 반 도 체		-광대역 네트워크 SoC+SW 기술 -초저전력 Connectivity SoC+SW 기술 -신뢰성 보장 SoC+SW 기술 ▪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뉴로모픽 고속 컴퓨팅 SoC+SW 기술 -지능형 메모리 SSoC+SW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 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oC+SW 기술 -IoT향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융 복 합 소 재	▪ 창의소재 -스케일 브리징 메조구조 소재 -현대판 연금술 기반 수소 저장 및 변환 소재 -계면 스펙트럼 현상에 의한 자화반전 용이 소재 -인체 동기형 바이오 금속소재 ▪ 타이타늄 제조기술 -(항공)랜딩기어, 날개구조물 -(국방)탱크, 장갑차, 잠수함 소총 등 -(의료)인공관절 임플란트용 재료 ▪ 탄소섬유 복합재 -(자동차)자동차용 내외장재 소재 일부 대체 -(항공)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체 및 부품 대체 ▪ 하이퍼플라스틱 -(화학소재)초경량·고강성·기능성 화학소재 -(자동차)엔진룸 적용 부품 및 구조체 부품 일부	▪ 창의소재기술 -현대판 연금술 기반 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핀케도결합에 의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현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바이오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 타이타늄제조기술 -저원가 고품질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분말 제조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 탄소섬유복합재 관련 기술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탄소섬유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탄소섬유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본산업] 20111 20119 20129 20131 20302 [연관산업] 30 31
	지 능 형 사 물 인 터 넷	▪ 공공 IoT -스마트 시티 ▪ 개인 IoT -스마트 헬스 ▪ 산업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 IoT 공통 플랫폼	▪ 디바이스 기술 (보안 내재형 초소형/저전력 IoT 디바이스)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 네트워크 기술 (QoS기반 IoT 트래픽 제어 사물통신망)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지 능 형 사 물 인 터 넷		-이종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 ▪ 플랫폼 기술 (10억개 이상의 사물연결용 분산 IoT 플랫폼)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플랫폼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 보안 기술 -IoT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안기술	62090 [연관산업] 61230 61291 61299
빅 데 이 터	▪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 ▪ 예측형 분석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 국가수요 대응·他미래 성장동력 연계 활용서비스	▪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 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분산처리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 관리기술 -다양한 응용 패턴 통합 지원 기술 ▪ 빅데이터 플랫폼 자원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향상을 위한 작업 스케줄링 기술 -최적의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지능형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분석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술 ▪ 빅데이터 원천기술, 분석기술, 응용 분야별 Domain Knowledge가 융합되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적용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후방산업] 26310 26321 58221 63112 26422 [본산업] 58222 62010 62021 62090 63991
첨 단 소 재 가 공 시 스 템	▪ 첨단소재 제품/부품 양산용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절삭·성형 장비, 공구, 검사, 제어(CNC)·운영 S/W 기술을 패키지로 개발 -CNC, 인코넬 CQ, 티타늄 등	▪ 중대형 첨단소재 위터렛/드릴링 복합가공시스템 -대형 가공기 설계/해석 기술 -대형 가공기 제작/평가 기술 -위터렛/라우팅/드릴링 헤드 기술 -대형 가공기 공간오차 보정 및 제어기술 -공작물 Universal Holding System 기술 ▪ 복합재료 가공용 융합공정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고강성 정밀 밀링 가공시스템	[후방산업] 25924 26299 27213 27216 28122 [본산업] 29176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첨단 소재 가공 시스 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산업용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산업용 가공해석 및 공정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하이브리드 개방형 CNC 사용자 코드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 CNC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개방형 S/W (NC Kernel, Interface, HMI 등) -첨단소재 가공 공정제어 모델 ▪제품 품질관리 연계형 SMART 검사공정 시스템 -가공부위 및 공구마모 검사시스템 -센서/측정장비와 기계장비 간 인터페이스 기술 -유연결합형 다중 검사-측정시스템 기술 -품질 분석 플랫폼 기술 ▪단삭재 가공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 -1600m/min급 초고속 공구속도 구현 기술 및 장비 -절삭효율 증대 대응 병진복합 가공 시스템 -연속 하이브리드 공정 적용 초경면화 시스템 -고능률 연속연마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대형 5축 가공시스템 및 핵심 장치 -고토크 킬링 헤드 -고강성 구조물 및 요소 기술 -최적 가공조건 선정 알고리즘 -고용량·초고분해능 CNC 제어모듈 -초고속 통신 기반 서보 모터/드라이브 및 엔코더 핵심 요소기술	29221 29222 29223 29229 [연관산업] 58221 72129 72919 30310 30320 30391 30399 31322

* 미래성장동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별표 3-1>

미래성장동력 19대 기술 업종분류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스마트자동차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연관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5G 이동통신	후방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
	본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후방산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본산업	24132	강판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1119	기타선박제조업
		42136	수중공사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본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연관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02040	임업관련 서비스업
		03111	원양 어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능형 로봇	후방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연관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착용형 스마트 기기	후방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
		13213	인조·재생·화학섬유 직물직조
		26322	컴퓨터 모니터(터치모니터, 터치스크린)
	본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관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후방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실감형 콘텐츠	본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연관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후방산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본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관산업	21102	생물학적 체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가상훈련시스템	후방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연관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맞춤형헬닉스케어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본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연관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후방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본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연관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후방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본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직류 송·배전 시스템	후방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본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연관산업	61220	무선통신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초임계CO ₂ 발전시스템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9141	불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본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연관산업	35119	기타 발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능형 반도체	후방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연관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융복합 소재	본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연관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능형사물인터넷	후방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1230	위성통신업
	연관산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빅데이터	후방산업	26310	컴퓨터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본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미래성장동력기술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후방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본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연관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미래성장동력 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별표 4>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 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소성가공 부문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관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5>

소재·부품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1310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1321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1340
	부직포 및 펠트	13992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펠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17)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999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20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20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20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
	합성고무	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0302
	농약 원제 및 중간체	20412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20421
	공업용 인쇄잉크	20423
	계면활성제	20431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20499
	화학섬유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2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22111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22191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2219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판 및 호스	22211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212 22213 22240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μ m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 (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회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 (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1 262 2632 264 265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 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탱크,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2916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29171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29173
	기체 여과기	29174
	액체 여과기	29175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6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29180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2919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 (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0110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정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의약품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정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 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 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 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옷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 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 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옷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에전(진도개) 산업, 양식 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 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 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과산업, 치과의료산업, 고품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작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청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음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예술·공연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릿 터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 1>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지원 배제

<별표 11>

물류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49100	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3	항만 내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별표 1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Inno-biz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벤처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별표 15>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게임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6>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섬유
	직물 직조업	1321	
	직물제품 제조업	1322	
	편조원단 제조업	1331	
	편조제품 제조업	133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정장 제조업	1411	섬유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	
	한복 제조업	1413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	생활용품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	
	신발제조업	1521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1	생활용품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제조업	1711	생활용품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구 분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비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9	생활용품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204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섬유
	화학섬유 제조업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제약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	
	한 의약품 제조업	2122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1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생활용품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제외)	2312	비금속광물·생활용품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1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압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	전기전자
	인쇄회로기관 및 전자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2622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	
	컴퓨터 제조업	2631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제조업	2731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	전기전자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	
	조명장치 제조업	2842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구 분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비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	일반기계
	유압기기 제조업	291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탱크,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3201	생활용품
	목재가구 제조업	3202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99	
기타 제품 제조업 (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	생활용품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	
	악기제조업	332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	
	가발, 장식용품 및 교사용 모형 제조업	339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5811	생활용품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품제조업 (10)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	기타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1차금속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9	
1차금속제조업 (24)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민감업종 분석 연구('15.12.)" 결과 피해업종

* 비교의 '기타'업종은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제외

<별표 17>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기준) ‘15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일시적경영애로(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3%p
소상공인 지원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청년프런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50%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